

부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4606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5288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46064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 선고 2014. 8. 27.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57,595원 및 그 중 101,759,890원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3. 11.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5. 1. 접수

제10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957,59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02,957,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2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6. 29.부터 2010. 6. 28.까지(이후 2013. 6.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하여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 A, B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3. 7. 11.부터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은 2009.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2013. 6. 28.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2013. 4. 30.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11. 한국씨티은행에 대출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59,890원의 합계 101,759,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이 최종보증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3. 7. 10.까지의 연 2.4%에 의한 위약금은 78,900원, 법적절차비용은 1,118,805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2013. 3. 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5. 1. 접수 제10032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구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101,759,890원, 위약금 78,900원, 법적절차비용 1,118,805원의 합계 102,957,5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인 101,759,8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전인 2013. 3. 5.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능률영어사의 채권최고액 99,000,000원의 근저당권, 주식회사 능률교육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었으므로 구상금 등 채권액인 102,957,59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102,957,595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사해행위 당시 부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3. 3. 5.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아직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3. 4.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7. 11.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채무자인 피고 B의 자력상태

1) 적극재산의 합계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301,305,68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판결 참조), 피고 C이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들은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권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의 합계 갑 제6호증, 을다 제9, 12, 13, 16의 각 기재, 명지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013. 11. 4.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02,957,595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0원, 국민은행 신용대출 채무 20,000,000원, NH캐피탈의 신용대출 채무 8,361,000원, 현대캐피탈의 신용대출 채무 8,221,000원, 동부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대출 채무 10,000,000원, 경남은행 대출 채무 6,566,000원, KB국민카드에 대한 대출 채무 5,000,000원,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 채무 7,072,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 50,0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 37,564,000원 합계 420,741,59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채권최고액 99,000,000원, 50,000,000원, 근저당권자 능률영어사, 능률교육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근저당권의 원인계약인 피고 B와 능률교육(구 능률영어사 포함)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3. 1. 31. 해지된 사실, 기본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 B의 능률교육(구 능률영어사 포함)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극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 2, 5, 8의 각 기재, 농협중앙회, 2013. 10. 10.자, 2013. 11. 4.자, 2014. 4. 21.자 각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3. 5.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66,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1,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0. 1.경 피고 B가 피고 C에게 대여한 30,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3. 20.에 지급하며, 잔금 135,000,0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경남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과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5,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원(2013. 2. 21. 지급된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처리함), 중도금은 2013. 2. 27. 30,000,000원, 2013. 2. 28. 20,000,000원, 2013. 3. 21. 20,000,000원, 2013. 3. 22. 30,000,000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3. 6. 4. 경남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와 수익자인 C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마. 수익자인 피고 C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와 친인척관계나 물품거래관계가 없고, 2013. 1. 12.경 피고 B에게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였는데 피고 B가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리할 부분이 많았으므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경남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피고 C이 모두 인수하여 현재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100,000,000원도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선의의 항변을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라 함은 채무자가 한 재산상 처분행위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정상 가격에 재산을 실제 매수한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을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007다28826(병합)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87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34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수익자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법률상 추정이 곧바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62356 판결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01,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경남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2010. 1.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준 전력이 있어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는 E, 피고 C은 F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인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301,305,680원임에도 그보다 저렴한 266,600,000원에 거래된 점, ④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C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피고

B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 ⑥ 2013. 3.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신용사고가 발생한 2013. 4. 30.의 바로 다음 날인 2013. 5. 1.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⑦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능률교육과의 기본거래관계가 확정되어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없었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 C도 그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이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능률교육, 능률영어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6. 12. 각 말소된 사실, 피고 B와 능률교육(구 능률영어사 포함)사이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이 2013. 1. 31. 해지되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으나, 해지 당시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6. 12. 말소된 사실, G는 H을 운영하는 자로 G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G와 피고 B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능률교육, 능률영어사,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였던 근저당권으로서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3) 소결 능률교육, 능률영어사,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그 말소 당시에도 부존재하였던 이상 위 각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인 102,957,59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창형

판사김태진

판사이재현

별지